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가. 제안이유

-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 우리 군 조례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하여 2015. 7. 10 조례 서식을 일괄개정 함.
- 일부 조례 중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추가 일괄개정으로 별지서식의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우리군의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이 있는 조항과 별지서식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별지서식 5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등의 대체수단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난 일괄개정시 누락된 5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조(「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수방단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4조(「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제5조(「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별지 1]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별지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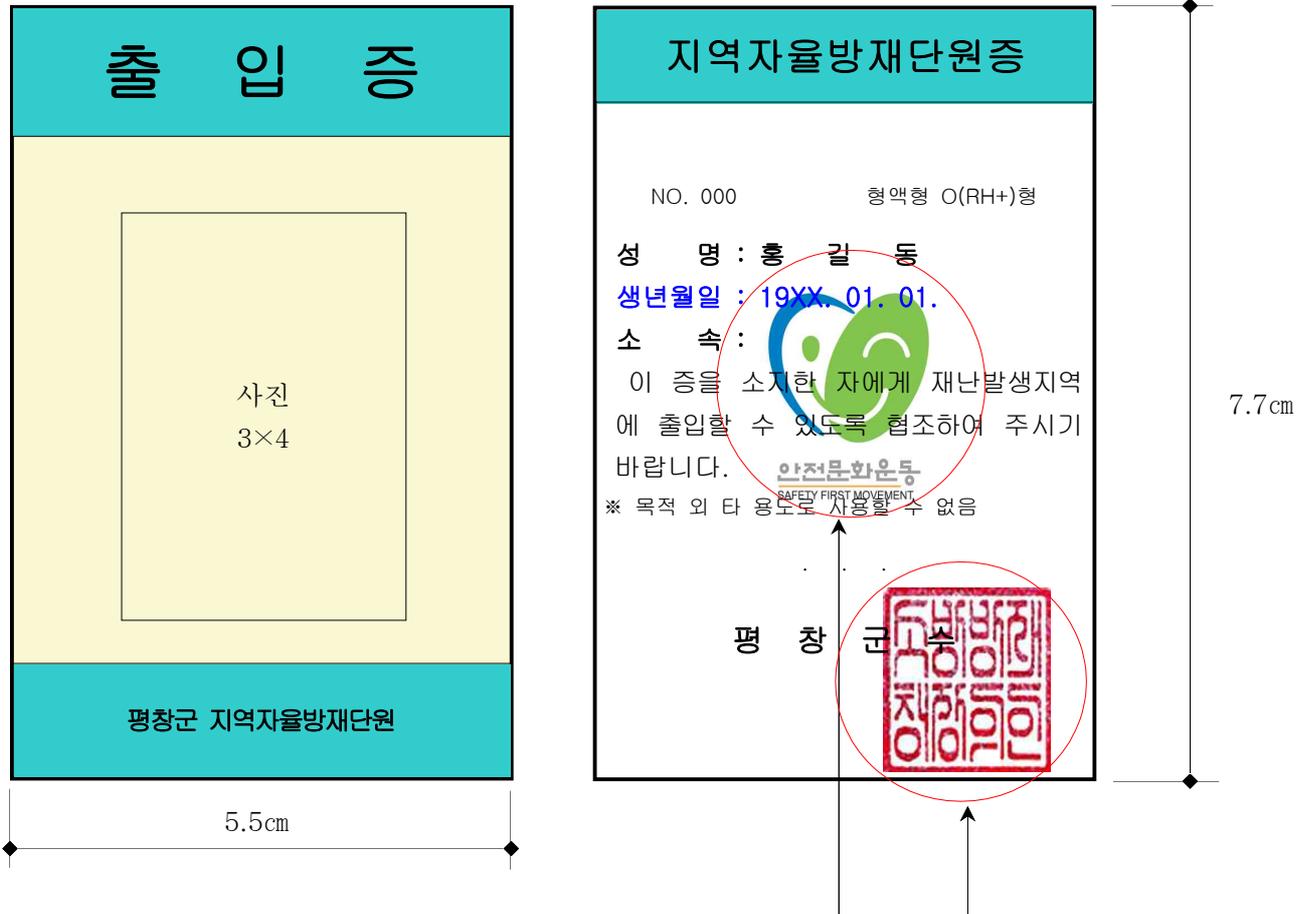
광 고 계 재 결 정 통 지 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명	☎		
결 정 사 항				
계재여부	계재	계재불가	불가시 사유	
발 행 일	년	월	일	발 행 량 매
광 고 료	금 액			
	납입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처	평창군청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의 공공발간물 광고계재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평창군수</p>				
<p>※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평창군 공공 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2]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별지제1호서식

출 입 증

(제12조제2항 관련)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크트나 로고

자치단체 직인 사용

[별지 4]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8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사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평창군 읍·면 번지(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검사일자(.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5]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